<u>2020년도 연말정산 개요</u> (외국인단일세울 19%// 근로소특공제 한도 2천만원) ㈜핵교시스템

			<u> 건물생인 매화</u> (3	·		E 2선반원) 취백교시스템
(A)총	급여액		·			수당,육아휴직수당,휴직급여,유치원교사인건비)
			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		공 제 액	속 산 공 식 총급여액× 70%
				총 급여액의 70% 350만원+(500만원 최	TIOHOL MOW)	(총급여액× 40%)+150만원
(B)근로소득공제 (C) 근로소득금액				750만원+(1.500만원 초	·	(총급여의 × 15%)+525만원
			.,	,200만원+(4,500만원 초	_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(총급여액× 5%)+975만원
			1억원 초과 ~ 3억6,250만원 1,	• •	<u> </u>	(총급여액× 2%)+1.275만원
			3억원 6,250만원 초과 2,000만원 2,000만원			
			C(근로소득금액) = A(총급여액) - B(근로소득공제) <u>※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소득333만원까지(단 근로소득만 있을경우500만원까지)</u>			
	(D) 본인공제		① 본인,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, 입양자, 위탁아동(당해년도 6개월이상 위탁한 경우),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(배우자제외)로서 남,			
인 적	기본	배우자공제	여60세(60.12.31이전출생)이상 혹은 20세이하(2000.1.1이후 출생),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), ③ 장애자가족(연령제한 없음), ④ 재혼의경우 배우자자녀 및 계부, 계모도 인정 ▶각항 공히 소득이 없거나, <u>근로소득금액(C)이 100만원 이하여야 항</u> .[인원제한 없이 1인당 150만원씩 종합(근로)소득금액에서 공제함.] ※연도 중 이혼은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함. ①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중 70세이상(50.12.31 이전출생자) 100만원 공제			
공제	공제 !	부양가족공제				
급 여	$\overline{}$					
원 부	l -		①본인및 배우자와 부양가족 ②국가유공상이자, 항시치료를 요하는 환자 1인당 200만원 공제 ①과② 모두 근로소득금액(C)이 연100만원이하여야 함(본인제한없음), ※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을 받는 분이 받아야 함.			
가 족						
사 항 확인			①배우자(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음)가 있거나,②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여성:1인 50만원			
확인			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(총급여 약 4,000만원 수준)자에 한해 적용			
			①한부모(배우자가 없는자)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 배제			
		금/건강/고용/산 범료 공제	①국민연금,공무원연금,사립학교교원연금,군인연금 연도중 납부액 전액공제(반납금제외), 건강보험료, 고용(산재)보험료(전액공제) (연금소급기여금의 경우 2002년1.1일이후분은 전액공제, 2001년도 분은 50%, 2000년 12.31이전분은 공제불가)			
특별 소득 공제	71111	34 8/11	[인금쪼립기어금의 영구 2002년1,1월이우군은 전곡당세, 2001년도 군은 50%, 2000년 12.51이전군은 당세월가) [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(전세금)의 40% 공제 [주택마련저축 + ① = 연300만원한도] 금융기관과 개인(대부업안됨)			
	주택자금공제		②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(무주택 또는 1주택(취득당시 5억이하)소유자중			
			●2015.1.1이후차입 (15년이상&비거치&고정)1,800만원/(15년이상&비거치or고정)1,500만원/(15년이상&기타)500만원/(10년이상)300만원			
			❷2012.1.10 후차입 (15년이상&비거치or고정)1,500만원 연500만원한도 ❸2011.12.310 저차인 (30년이상 1.500만원) 여1.000만원하드			
			●2011.12.31이전차입 (30년이상 1,500만원) 연1,000만원한도 ●2003.12.31이전차입 (10년이상 600만원)(15년이상 1,000만원)(30년이상 1,500만원)			
	기부금(이월분)		①2013년 12월 31일이전 이월 기부금 ②2014년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에서 공제되며, <mark>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</mark>			
	개인연금저축 ①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.12.31까지 가입한 자, ※					
	주택N	마련저축				
	T-012/14		가입자(연120만원 이하), 총 급여7천만원이하와 무주택 확인서제출 ③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15만원이하) ①+②+③=연300만원까지공제			
コ	투자조합출자공제		①대상자: 2002.1.1 이후 창업투자조합, 벤처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자 (소독공제액에 상당한 세액의 20%농록세부과) ②고제액: 2014년12월 31일까지 출 투자금이 10%(개이어 진전 또는 개이투자조하을 통해 베워기어에 투자하는 경우 2012년부 20%			
			②공제액: 2014년12월 31일까지 출.투자금의 10%(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12년분 20%, 2013년분 30%, 2014년분 5천만원이하는 50% 5천만원초과분 30%) 2015년분 1,500만원이하 100%공제(신설)			
밖의 소득			①근로자와 배우자,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,비속(나이제한 없음,소득금액 제한있음)			
공제			②공제대상금액: (신용카드 등			
	<mark>신용카드</mark> (형제자매안됨)					⊦원 이하 도서․공연비,박물관,미술관(30%)추가공제 - 매주교통사용보(40%), 강강100만원써 (⊘⊙⊙⊙
			100만원 (박물관,미술관사용분 19년7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) ⑩전통시장(제로페이)및·대중교통사용분(40%) 각각100만원씩 (⑪⑥⑩⑧순 으로 공제), ((제로페이 사용액 * 40%한도, 전통시장사용분과 합산 100만원공제), 추가공제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적용함)			
			●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는 공제한도 330만원과 총급여20%중 적은금액공제			
			❷총급여액 7천만원 ~ 1억2천만원은 공제한도 280만원 ❸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는 공제한도 230만원			
						저축납입액의 40%(연 240만원 한도) ※농특세
=	소득공.	제 종합한도			적용, 연 2,500만원 (2014년 벤처	<u> </u>
			과 세 표 ₹ 1,200만원 0		<u>세</u> 율 6%	<u> </u>
(J) 산 출 세 액			1,200만원초과 ~ 4,6		15%	1,080,000원
			4,600만원초과 ~ 8,8		24%	5,220,000원
		세 액	8,800만원초과 ~ 1억	5천만원이하	35%	14,900,000원
			1억5천만원초과 ~	3억이하	38%	19,400,000원
			3억초과 ~ 5억		40%	25,400.000원
			5억 초과		42%	35,400,000원
			(K)산출세액=(J)과세표준금액 × 세율 - 누진공제			
	근로소득 세액공제		① 총급여 3,300만원 이하 : 74만원한도 ② 총급여 3.300만원 초과 : 74만원 - [(총급여액 - 3.300만원)*0.008] ->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공제			
			③ 총급여 3,300만원 초파 : 74만원 - [(총급여액 - 3,300만원)*50] -> 50만원보다 적는 경우 50만원 공제 ③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: 66만원 - [(총급여액 - 7,000만원)*50] ->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공제			
			①1명 : 15만원 ② 2명 : 30만원 ③ 3명 이상 : 30만원 + 2명초과 1명당 30만원(3명 60만원, 4명 90만원, 등등)			
	출산, 입양 공제		①첫째 출생·입양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70만원			
		연금저축	공제한도 400만원			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자 300만원)
	연금 계좌	퇴직연금	납입액(연 700만원한도)*12%(단 총급여 5.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			
	기기기	과학기술인공제	5,500만원 또는 공업소득금액 4선만원이 하는 15%공제)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			
		보장성보험료	험료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(연 각각100만원한도)*12% (단 장애인 전용보험은 15%공제)			
		<u> </u>	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!	<u>보험자로 지출</u> 한 보장성	<u> 보험료 납입액(연</u> 각각100만원현	한도)*12% (단 장애인 전용보험은 15%공제)
		100101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	배우자, 생계를 같이히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외	
		100101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	배우자, 생계를 같이히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요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	아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
	■	의료비공제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i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	배우자, 생계를 같이히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베기간종료일65세이상인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요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	아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
	≡	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	배우자, 생계를 같이히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베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돌가하여 공제)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요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	마 형재자매(연령 및 소특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당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
	侧「	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	배우자, 생계를 같이히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레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=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<u>※</u> 부부 <u>천만원이하 (공제율20%</u>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합 만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	마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당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
(K)	별	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	배우자, 생계를 같이히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레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『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<u>※</u> 부부 <mark>천만원이하 (공제율20%</mark>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합 만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	마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
세액		의료비공제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*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맛있음)와 형재,자매,처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만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 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	가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성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골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
	별	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: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<mark>천만원이하 (공제율20%</mark>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!있음)와 형재,자매,처 보양가족과 자비유학 특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만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 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통 례학생을 대상: 본인(전맥-대학원	가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성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골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
세액	별 세 액	의료비공제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인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누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를 →공제액 : 영유아,초중등(300)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타하여 공제) 중복공제하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나있음)와 형재,자매,처 알가족과 자비유학 특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원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.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 네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면)*15%,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	학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당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
세액	별 세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: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: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혼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들 →공제액 : 영유아,초중등(3009 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확전아동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비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기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<mark>천만원이하 (공제율20%</mark>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였음)와 형재,자매,처 보양가족과 자비유학 특용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원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 내기 등 문인(전맥-대학원 대학생을 대상: 본인(전맥-대학원 원리금 상환액 공제 면)*15%,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강	마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당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당료, 교내방과후수업료·특별활동비·급식비 →중
세액	별 세 액 공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충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현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누 ④근로자(대충자)가 든든학자금 →공제액 : 영유아,초충등(300 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탁전아동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;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등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<mark>현만원이하 (공제율20%</mark>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였음)와 형재,자매,처음학 등 및 일반상향작자금 [단원)*15%,대학(900만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7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레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산환액 공제병) 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2나지ㆍ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0.5	마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산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당료, 교내방과후수업료·특별활동비·급식비 →중 당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
세액	별 세 액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금 →공제액 : 영유아,초중등(300) 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학전아동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: 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물20%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맛있음)와 형재,자매,처 살아주과 자비유학 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동 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기에 기부한 금액 - 근로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 내기 등 문인(전맥-대학원 대학생을 대상: 본인(전맥-대학원 원리금 상환액 공제 면)*15%,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강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골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함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
세액	별 세 액 공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투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금 → 공유이, 초중등(300) → 영유아는 6세미만 취학전이동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: 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: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을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물20%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맛있음)와 형재,자매,처음 등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동 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기에 기부한 금액 - 근로의 100/110이고, 10만원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계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원)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항)을 이용한수 2차된 (체육시설포항)을 이용한수 2차된 ,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0년 자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원조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골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함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
세액	별 세 액 공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금 지정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;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투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를 →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 고등학생 교복구임비용 교육비; 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;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의 15% /2천만원초과 지정기투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한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였음)와 형재,자매,처럼양가족과 자비유학 특정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원당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기에 기부한 금액 - 근로의 100/110이고, 10만원 10만세기 및 당한금, 위보금(사회복지,문화 등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계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빙/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는 지 :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발초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복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산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상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 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상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부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
세액	별 세 액 공	의료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기 정치자금 부 법정 금 지정 (종교단체)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투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를 →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; 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: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의 15% /2천만원초과 는 기부금의30%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베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*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* 있음)와 형재,자매,처 *양가족과 자비유학 특 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 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기 에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원 방단체, 국방헌금, 위 라는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[레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 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원기금 상환액 공제 원기금 상환액 공제 원기금 상환액 공제 원기 등 (지역 사업 및 사업	과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급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향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 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부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 기부한 기부금)
세액	별 세 액 공 제	의료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(종교단체) 표준세액공제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듣든학자를 →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 →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; 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 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의 15% /2천만원초과 는 기부금의30% 목명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베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"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(있음)와 형재,자매,처 당가족과 자비유학 특 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 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당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당의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원 비방단체, 국방현금, 위 발금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1세액공제를 신청하지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통례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보)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강하면, 처형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당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보조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부금 당시를 목적으로설립한 비영리 법인에아니한 경우 적용 ※정치자금기부금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향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 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루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 기부한 기부금) 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, 연 13만원
세액	별 세 액 공 제	의료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기 정치자금 부 법정 금 지정 (종교단체)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 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 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 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※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 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! 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듣든학자를 →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 →당에 는 6세미만 취확전이동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; 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 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기부금의30% 국가, 지 지정기부 금(종교: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 ①미분양주택을 95.11.1~97.12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베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"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였음)와 형재,자배,처 당가족과 자비유학 특 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 당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당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당의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원 비방단체, 국방헌금, 위 발금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.31까지 취득한 차입금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.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통례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황액 공제 보)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공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공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보조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복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를 목적으로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아니한 경우 적용 ※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이자상황액의 30% 공제 (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향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 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루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 기부한 기부금) 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, 연 13만원
세액	별 세 액 공 제	의료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(종교단체) 표준세액공제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%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** 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. ** (한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(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호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금→공제액 : 영유아,초중등(300)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확전아동고등학생 교육비: 인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강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천만원이하는 기부금 2차 (2천만원조과 무기부금의30% 국가, 지정기부는 기부금의30% 무별소득공제 및 특별 ①미분양주택을 95.11.1~97.12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레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로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<u>※부부</u> 천만원이하 (공제율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남있음)와 형재,자매,처 당가족과 자비유학 특 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등 당으로 어린이당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까 에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 비방단체, 국방현금, 위 라는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.31까지 취득한 차입금 근로소득산출세액 ×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함 만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.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[환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발)*15%,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,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당자 채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지 보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부공악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를 목적으로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아니한 경우 적용 ※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공제 (국외근로소득 / 근로소득금액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산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함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 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함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가능 가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우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 기부한 기부금) 당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, 연 13만원 공제액의 20% 농록세 부과)
세액	별 세 액 공 제	의료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금 (종교단체) 표준세액공제 당임금이자세액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;②주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비중 적은 금액을 700만원에 추 %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과 ;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(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현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금→공제액: 영유아,초종등(300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학전아동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(공교,당학원)하는 기부금(종교,당학원)하는 기부금(종교,다) 등 기부금의30%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①미분양주택을 95.11.1-97.12 ①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= ②조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*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현만원이하 (공제물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맛있음)와 형재,자매,처 양가족과 자비유학 특 양 및 일반상향작자금 (양 및 일반상향작자금 (양 등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, 에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원 1방단체, 국방현금, 위 발금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설리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설레액공제를 신청하지 31까지 취득한 차입금 근로소득산출세액 × 2년간 비과세 (미국, 8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을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계약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산환액 공제병호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2차지 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당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생조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목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반인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공제 (국외근로소득 / 근로소득금액명로, 남아프리카공화국, 뉴질랜드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일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항료, 교내방과후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급식비 →중 항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라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금 등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 기부한 기부금) 당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. 연 13만원 공제액의 20% 농록세 부과)
세액	별 세 액 공 제 주택 지 외국	의료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금 (종교단체) 표준세액공제 당임금이자세액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: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비중 적은 금액을 700사용액과 :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 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(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호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두 작자금이 하는 기부금(종교) 당하는 6세미만 취학전이동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(종교:모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①미분양주택을 95.11.1-97.12 ①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= ②조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0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: 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현만원이하 (공제물20% 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: 있음)와 형재,자매,처로 양가족과 자비유학 특당 및 일반상환학자금 [단원 * 15%,대학(900만원 : 50만원 : 50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의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해확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학생을 위원리금 산환액 공제병기 등 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 2차기 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당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별초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독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를 목적으로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아니한 경우 적용 ※정치자금기부들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공제 (국외근로소득 / 근로소득금액명국, 남아프리카공화국, 뉴질랜드기본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(오피를 기본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(오피를 기원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(오피를 기원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(오피를 기본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(오피를 기원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(오피를 기원을 기원되었다고 보급되었다고 보급되었다고 보급되었다고 되었다고 보급되었다고 보급되었다	와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체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함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 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조과 기부금은 25% 라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부 기부한 기부금) 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, 연 13만원 공제액의 20% 농록세 부과) , 호주, 아일랜드) 스텔호, 고시원)의 주택을 임차한 월세액 또는 기준시가
세액 공제	별 세 액 공 제 주 약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금 지정 (종교단체) 표준세액공제 라입금이자세액 남부세액및감면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: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비중 적은 금액을 700나용액과 :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(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들 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학전아동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: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(종교:2천만원이하는 기부금의30% 고등학사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①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도액 등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생각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30% 교육대 등장기학금의30% 모두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생각하는 기부금의30% 모두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생각하는 기부금의30% 모두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항도액 등 111.1~97.12 입조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조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주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구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03억 이하주택 20종급여 5천5백만약서, 통장) ※주민등록등본과 계약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*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물20%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맛있음)와 형재,자매,처 *양가족과 자비유학 특 중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원 당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기 에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원 비방단체, 국방현금, 위 보금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그로소독산출세액 × 그로가 비과세 (미국, 일 대 7천만원이인 근로자 및 원 이하(연 750만원한도으 방서주소지가 동일해야 함.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계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행)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라시 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당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원조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부공악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를 목적으로설립한 비정리 법인에 아니한 경우 적용 ※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공제 (국외근로소득 / 근로소득 / 근로구등대학적되는 15% 등 15%	함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상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골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함료,교내방과후수업료 ·특별활동비 · 급식비 →중 당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1,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본금,문화예술진흥기부금,국립대학치과병원등 (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종교단체기부기부한 기부금) 당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· 연 13만원 공제액의 20% 농록세 부과) ,호주,아일랜드) 스텔호,고시원)의 주택을 임차한 월세액 또는 기준시가 하(연 750만원한도의 10%)-제출서류 (주민등록등본,계
세액 공제	별 세 액 공 제 주 약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(직계존속 공제안됨) 정치자금 부 법정 금 지정 (종교단체) 표준세액공제 라입금이자세액 남부세액및감면	①의료비 합계가 근로자본인,으로 근로소득의 3% 초과하는 :②추가공제:근로자본인 및 과서비중 적은 금액을 700나용액과 :※산후조리원 비용 - 총급여 7:①본인(전액),근로자의 자가부(②배우자및 자녀(소득금액 제한 ③국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④근로자(대출자)가 든든학자들 공제액: 영유아,초중등(300)→영유아는 6세미만 취학전아동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:①정당,후원회,선거관리위원회(공제액: 10만원 이하는 기부금(종교:2천만원이하는 기부금의30% 고등학사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①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도액 등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생각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30% 교육대 등장기학금의30% 모두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생각하는 기부금의30% 모두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생각하는 기부금의30% 모두 111.1~97.12 입기되었다면 공제 항도액 등 111.1~97.12 입조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조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주세조약체결국가 - 소득세 20구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03억 이하주택 20종급여 5천5백만약서, 통장) ※주민등록등본과 계약	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 금액과 의료비 700만원 네기간종료일65세이상인 *가하여 공제) 중복공제허용함 ※부부 천만원이하 (공제물20% 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맛있음)와 형재,자매,처 *양가족과 자비유학 특 중 및 일반상환학자금 [만원)*15%,대학(900만원 당으로 어린이집,놀이방 공제허용1인당 50만원기 에 기부한 금액 - 근로 의 100/110이고, 10만원 비방단체, 국방현금, 위 보금(사회복지,문화 등 의 보급, 그 밖의 교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그로소독산출세액 × 그로가 비과세 (미국, 일 대 7천만원이인 근로자 및 원 이하(연 750만원한도으 방서주소지가 동일해야 함.	는 부양가족 및 부모(장인장모)와 중 적은 금액을 15%공제함 자, 장애인의료비, 난임시술비 한 공제금액를 주고 받을수 있음.), 200만원한도 ※실손의료비는 용(직업전문학교, 학원 등 근로자남,처제,시동생(주민등본과 생계를 계학생을 대상: 본인(전액-대학원배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행)*15%, 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,소학원(체육시설포함)을 이용한수라시 체험학습비,수학여행등 1인당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원조과시 3천만원이하기부금은 15% 문구호품, 사립학교, 사회복지기부공악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를 목적으로설립한 비정리 법인에 아니한 경우 적용 ※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공제 (국외근로소득 / 근로소득 / 근로구등대학적되는 15% 등 15%	와 형재자매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을 대성 상산금액과 700만원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의료 ※난임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 공제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) 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) 은 본인만 1학기 이상) 독금액제한없음,직계존속공제가능)*15% 항료, 교내방과후수업료 ·특별활동비 ·급식비 → 25 정 30만원까지(1인당 교육비한도 300만원내) 가능 ,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% 본금, 문화예술진흥기부금, 국립대학치과병원등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)/ 종교단체기투기부한 기부한 기부금) 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, 연 13만원 공제액의 20% 농록세 부과) , 호주, 아일랜드) 스텔호, 고시원)의 주택을 임차한 월세액 또는 기준시기